

의안번호	2219015
의 퇴 인	양부남의원
회 답 일	2026.7.22.
추계번호	26B2649

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2조제1항 (정밀안전진단의 실시)	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.(제1항) 1. 제1종시설물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2종시설물. 이 경우 전단에 따른 제2종시설물에는 제7조제2호마목에 따른 건축물 중 「건축법」 제2조제2항제5호 및 제13호에 따른 <u>문화</u> 및 <u>집회시설과 운동시설</u>이 포함되어야 한다. (현행) 제1종 시설물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2종 시설물 (개정안) 제1종 시설물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2종 시설물(<u>문화 및 집회시설과 운동시설</u>)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근거규정
1	안 제12조제1항 (정밀안전진단의 실시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현행 정밀안전진단 대상에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문화 및 집회시설과 운동시설을 포함하려는 사항으로, 이 중 국가,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인 경우 정밀안전진단 실시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(현행) 정밀안전진단 대상: 제1종 시설물, 제2종시설물(비건축물: 교량, 터널 등) 중 안전등급 D등급, E등급
 - (개정안) 정밀안전진단 대상: 제2종시설물(문화 및 집회시설, 운동시설 포함)
 - 그런데, 개정안은 정밀안전진단 대상에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문화 및 집회시설과 운동시설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나, 정밀안전진단 대상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현행과 같이 안전등급 D·E 등급으로 지정된 대상으로 할지,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것인지가 불확정적임
 - 이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물량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을 통하여 구체적인 추계 대상이 지정되어야 하고, 시설물별 안전등급 지정일, 종전 정밀안전진단 실시여부, 해당 시설물별 정밀안전진단 비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나 현시점에 이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산하기 곤란한 사유에 해당함
 - 다만, 국토교통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6년 기준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문화 및 집회시설과 운동시설의 안전등급 지정 현황은 다음과 같음

[표 1] 문화시설·집회시설 및 운동시설 안전등급 현황: 2026년 기준

(단위: 개소)

안전등급	계	공공관리주체		민간관리주체	
		문화시설·집회시설	운동시설	문화시설·집회시설	운동시설
계	1,597	594	280	368	355
A등급	142	57	40	19	26
B등급	1,324	482	209	323	310
C등급	116	49	26	24	17
D등급	3	2	0	1	0
E등급	0	0	0	0	0
미지정	12	4	5	1	2

주: 2024년과 2025년 안전등급별 현황은 [참고자료]에서 확인할 수 있음
 자료: 국토교통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정리

-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의 변화를 현 시점에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Ⅳ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장우윤	예승우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장우윤	02-6388-3735	jangwy93@nabo.go.kr